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 성범죄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487
------------	-----

발의연월일 : 2009. 2. 12.
발 의 자 : 채명지 의원 외 7인
(의원 공동발의)

1. 제안이유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관내 청소년 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달성군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나.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다. 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청소년 성범죄 예방과 보호를 위해 관련 단체 및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 설치
- 라. 위원회 구성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안 제11조)
 -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3조·제24조, 제31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제정조례안: 별첨
- 예산조치: 예산부서와 별도 협의
- 입법예고: 생략(의원발의)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 성범죄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고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라 함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
2. “청소년대상 성범죄”라 함은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른다.
3. “보호자 등”이라 함은 친권을 행사하는 자, 미성년 후견인, 기타 청소년을 현실적으로 보호하는 자 또는 학교, 보육시설, 기타 시설에 있어 청소년의 육성에 관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군의 책무) ①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관내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재원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군은 성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청소년에 대한 치료 및 보호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③ 군은 청소년 성범죄 예방을 위한 학교 및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성범죄 예방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 ④ 군은 제3항에 따른 학교 및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이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군민, 보호자 등의 책무) 모든 군민, 보호자 등은 청소년 성범죄 예방 및 보호를 위해 건전한 사회 환경 조성과 청소년을 보호·선도

- 교육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달성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청소년 성범죄를 예방하고 성범죄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청소년의 성범죄 예방을 위한 조사·연구·교육 및 예방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성범죄 피해 청소년에 대한 치료·재활 및 보호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1호 및 2호를 수행하는 청소년 관련 단체 또는 전문가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③ 군은 기본계획 수립시 교육청, 경찰서, 청소년 관련 단체 등의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관계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청소년 성범죄 예방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청소년 성범죄 예방 및 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7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와 관련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로 군수가 위촉한다.

1. 달성군의회 의원
2. 미취학 아동을 위한 유치원 교사
3. 초·중등 교원

4. 청소년 관련 단체 또는 성범죄 상담 전문가
 5. 의료인
 6. 법조인
 7. 학부모
 8. 경찰 및 관련 공무원
 9.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이 된다.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회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위원의 건강 등의 일신상의 이유로 해촉을 원할 때
3. 기타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1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청소년 성범죄 예방 및 청소년 보호를 위한 기본 계획 수립
2. 청소년 성범죄 예방 및 청소년 보호를 위한 관련 기관의 협력체

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기타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등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i)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령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고, 청소년을 성적 착취와 학대 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연구·교육 및 계도와 더불어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며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23조 (피해청소년의 보호)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가 피해청소년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의 가정구성원인 관계에 있는 경우로서, 피해청소년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가정 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 제8조(임시조치의 청구 등), 제29조(임시조치) 및 제49조(항고)부터 제53조(집행의 부정지)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4조 (피해청소년과 보호자의 상담 및 치료) 국가는 피해청소년과 그 보호자의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위하여 제30조의 상담시설로 하여금 피해청소년과 그 보호자에게 상담이나 치료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31조 (교육프로그램운영 등) ① 청소년을 성적 착취와 학대 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제29조와 제30조에 따른 보호시설이나 상담시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제26조제2항에 따른 교육·상담 등 대상청소년의 선도보호
2. 피해청소년과 대상청소년의 치료·안정회복과 사회복귀를 돋는 프로그램 운영
3. 피해청소년과 대상청소년의 법정대리인 등을 위한 교육·상담 프로그램 운영
4.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의 가해청소년과 그 법정대리인 등의 교육·상담 프로그램 운영
5. 청소년 성보호 전문가 교육
6. 그 밖에 청소년을 청소년대상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업무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보호시설이나 상담시설의 업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

범죄를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하여 청소년

에 대한 성교육 및 성폭력예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에 대한 성교육 및 성폭력예방에 필요한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1997.8.22>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 성범죄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 채명지 의원 외 7인 발의 -

서명날인서

의원명	서명	날인
채명지	채명지	채
김기석	김기석	김
정종태	정종태	(21)
김순호	김순호	(Kim)
방종영	방종영	방종영
서정우	서정우	서정우
이석원	이석원	이석원
정명자	정명자	(2)